

[사 건 명] 행심 2019 - 7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9. 2.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교내 자체 위클래스 심리상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2. 15.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5.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진술을 받은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해서 피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였기에 위법하다.
- 나. 청구인도 선배에게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여 왔기에 자신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인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배상했다.
- 라. 학폭위에서는 1차 폭행이 있었을 당시, **반 지도교사와 청구인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행하였고, 2018년 4월이 아닌 2018년 7월경 처음 폭력이 발생한 일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고 사건개요의 일시를 잘못 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지도경력이 있는 교사’는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생활안전교육부장이 학폭위 위원으로 임명된 데에는 위법성이 없고,

학폭위 회의 시 청구인과 청구인 보호자가 참석하여 전담기구가 조사한 사안에 대한 확인, 질의응답, 의견진술을 하였고, 학폭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생활안전부장의 개인적 의견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결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후배관리에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교육받았다.

다.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보통(2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높음(1점)으로 판단하여 총 11점에 해당하는 ‘6호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배상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조치별 적용기준의 기본 판단요소인 화해정도를 높게 판단하였다.

라. 학폭위 위원들은 목격학생의 진술 및 전담기구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 측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행을 하지 않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각 제출자료, 청구인과 피해학생, 목격학생들의 각 자술서, 청구인과 피해학생 측 학폭위에서의 각 진술,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같은 △△△△과 전공생 후배인 피해학생을 2018. 4.말경부터 (청구인은 2018. 7.경부터라고 주장하나 피해학생과 목격학생들 진술에 의하면 2018. 4.말경부터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1. 11.경까지 작업 시 사용하는 철, 플라스틱 망치, 몽키 스패너, 곡선자 등

장비들이나 주먹으로 때렸고, 특히 2018. 9.경 전공반 지도교사와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잘못을 빌고 난 후부터는 폭력의 정도나 빈도가 더 심해져서 피해학생 측이 2019. 1. 24.경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는바, 청구인의 피해학생에게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학폭위 위원 구성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진술을 받은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해서 피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였기에 위법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학폭위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존재하고, 학폭위 위원의 발언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생활안전교육부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전담 기구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생활안전교육부장 김00은 학폭위 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학폭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김00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학폭위 재적위원 9명 중 김00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석하였고, 김00을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6명으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를 충족하여, 나머지 위원들로도 학폭위 개최가 가능한 사안이고, 김00이 학폭위 심의를 주도하거나 다른 위원들 의결에 영향을 주어서 공정한 심의를 해하고 피해자 측을 대변하였다고도 보기는 어려운 바, 김00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도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선배에게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여 폭력이 정당화되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 내에 선배가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위와 같은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의거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후배관리에 정당화 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인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피해자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까지 배상하였음에도, 학폭위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행하고 청구인 측 진술은 들어주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측 요구로 기능반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조치별 적용기준 판정시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를 높음으로 판정하였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한 판단정도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학폭위 회의 시 청구인과 청구인 보호자가 참석해서 전담기구가 조사한 사안에 대한 확인, 질의응답, 의견진술을 하였는데, 학폭위 위원들은 청구인 주장뿐 아니라 피해학생, 목격학생들 진술, 전담기구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개요를 파악하고 청구인 측에게 사실 확인을 했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폭위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만큼,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